

근대이행기 호남유학자 이기(1848~1909)의 국토인식과 자강론*

원재연**

차례

1. 머리말
2. 토지 공유론과 황무지 개척론
 - 2.1. 토지 공유론
 - 2.2. 황무지 개척론
3. 간도 영유권과 만주 삼분론
 - 3.1. 간도 영유권(間島領有權) 인식
 - 3.2. 만주 삼분론(滿洲三分論)
4. 맺음말

국문초록

이기(李沂, 1848~1909, 호 海鶴)는 조선후기 중농주의(重農主義) 실학사상(實學思想)을 계승하여 토지제도 개혁이야말로 국가의 세원을 확충하고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 B806361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중점연구소 연구교수

백성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자강(自強, 근대화) 정책의 기본이 된다고 본 애국계몽(愛國啓蒙) 사상가였다. 그는 대지주(大地主)들의 토지소유욕을 포기하게 하는 감조론(減租論)을 통해서 사전(私田)의 국유화(國有化)를 점진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정전제(井田制)의 이상을 펼치고자 했는데, 이는 그의 토지공유론(土地公有論)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기는 1899년 대한제국의 양전사업(量田事業)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진전(陳田) 개간 및 이를 통한 지세(地稅) 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1904년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荒蕪地開拓權) 요구에 격렬한 반대의 상소를 4차례나 개진함으로써 보안회(保安會)와 함께 전국적인 언론투쟁을 전개하여 마침내 일제의 야욕을 일시적으로나마 꺾을 수 있었다. 이기는 고조선(古朝鮮)으로부터 시작하여 고구려(高句麗), 발해(渤海) 시대에 이르기까지 만주(滿洲) 지역의 대부분이 우리 민족의 생활터전이었다는 상고사(上古史) 인식에 기반하여, 간도(間島)를 포함한 만주 전체가 우리의 영토(領土)로 회복되어야 마땅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에 입각하여 그는 현명한 간도관리사(間島管理使)의 지속적 파견을 정부에 촉구했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경우 일본을 설득하여 러시아가 차지했던 만주를 한, 중, 일 삼국이 균분(均分)하자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강론(自強論)에 입각한 대내적 국토관의 대외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이기(李沂), 중농주의, 애국계몽사상가, 토지공유론, 감조론(減租論), 간도영유권, 만주삼분론, 자강론, 국토인식

1. 머리말

해학(海鶴) 이기(李沂, 1848~1909)¹⁾는 조선후기 실학자 유형원(柳馨

1) 이기(李沂, 1848~1909): 字는 백증(伯曾), 號는 해학(海鶴), 질재(質齋), 재곡(梓谷). 전라북도 만경(萬頃, 현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에서 출생하여 26세 때인 1873년 경에 고향을 떠나 진안(鎭安), 대구(大邱), 순창(淳昌) 등지를 거쳐 1893년경 구례

遠, 1622~1673, 호 磻溪)과 정약용(丁若鏞, 1762~1836, 호 茶山, 與猶堂)을 사숙한 유학자로서, 대한제국기에 양전사업을 통하여 광무정권의 개혁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일제가 요구한 황무지 개척권을 보안회와 함께 언론투쟁을 통하여 좌절시켰다. 또한 상소와 서찰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건의 등 언론활동을 추진하였고, 을사오적(乙巳五賊)에 대한 의열투쟁에 나섰으며, 대한자강회, 호남학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회보 발행, 학교 설립 등 교육계몽 운동에 종사함으로써, 일제에 침탈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진력하다가 순국한 애국적 사상가요 실천가였다. 이기에 대해서는 인물사상 전반²⁾, 정치경제³⁾, 교육사상⁴⁾,

(求禮)로 이주하여 생활하였다. 그후 구례의 가족과 생활 터전을 그대로 둔 채, 1898년경부터 단신으로 상경하여 서울에서 언론, 교육 활동 등에 종사하다가 1909년 7월 국권상실을 비판하며 단식하다가 순국하였다.

- 2) 김상기, 「이해학의 생애와 사상에 대하여」, 『아세아학보』 제1집, 아세아학술연구회, 1965.
 임창순, 「한말의 애국자 이기와 해학유서」, 『국회도서관보』 제2·3집, 1965.
 이강오, 「해학 이기 선생의 생애」, 『해학 이기 선생』, 해학이기선생구국운동추진비 건립위원회.
 이강오, 「항일구국의 근세 실학자」, 『전북인물지』 上, 전북에향운동본부, 1983.
 이영협, 「해학 이기교」, 『학술지』 제14집,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1972.
 정경현, 「한말 유생의 지적 변신-해학 이기의 경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육사논문집』 제23집, 1982년에 재수록)
 박종혁, 「해학 이기의 사상적 전이의 과정(해학연구 기일)」, 『한국한문학연구』 제12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9.
 정승교, 「이기(李沂)의 사상에서 ‘공(公)’의 의미」, 『역사와 현실』 제29호, 한국역사연구회, 1998.
- 3) 나중우, 「해학 이기의 구국운동과 그 사상」, 『원광사학』 제2집, 원광대학교 사학회, 1982.
 김도형, 「해학 이기의 정치사상연구」, 『동방학지』 제3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2.
 박종혁, 위의 논문.
- 4) 전영배, 「해학 이기의 교육사상」, 『국제대학 논문집』 제6집, 국제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78.
 전영배, 「구한말의 가정교육관-해학 이기의 가정학설을 중심으로」, 『교육사교육철학』 제3호, 교육사교육철학연구회, 1979.

농업사⁵⁾, 종교사상⁶⁾, 문학사상⁷⁾ 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대략 20여 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그밖에도 향토사의 측면에서 전기(傳記), 자료집 등을 비롯한 다양한 홍보책자가 발행되었다.⁸⁾

그러나 한편으로 김용섭 교수의 양전사업 및 토지제도 관련 연구성과⁹⁾를 제외하면, 이기의 사상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를 별도의 단일 주제로 삼아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이기는 그가 젊은 시절부터

-
- 임인자, 「이기의 가정교육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이완재, 「해학 이기의 교육사상」, 『史學論志』 제1집, 한양대학교 사학과, 1973.
 이증각, 「한말실학자 해학 이기 연구-교육사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 편, 「이기」, 『교육사상가평전: 한국편』, 교육연구사, 1987.
 김광수, 「시론이기적교육사상」, 『조선사연구』, 1983
- 5) 김용섭, 「광무연간의 양전사업에 관한 일연구」, 『아세아연구』 제11권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8.
 김용섭, 「광무연간의 양전·지계사업」, 『한국근대농업사연구』 下, 일조각, 1968.
 김용섭, 「해학 이기의 토지론과 양전론」, 『증보판 한국근대농업사연구』 下, 일조각, 1984.
- 6) 박종혁, 「해학 이기의 천주교 비판-프랑스 신부 로베르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下, 벽사리우성교수정년퇴직기념논총, 창작과 비평사, 1990.
 박종혁, 「구한말 해학 이기의 국권회복을 목표로 한 민족종교사상」, 『한배달』(가을호), 1990.
 이유립, 『대배달민족사』 고려가, 1987.
- 7) 한정석, 「해학 이기의 사상과 문학」,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기태완, 「해학 이기의 사상과 시문학」,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7.
 박종혁, 「해학 이기의 현실인식에 대한 문학적 대응」, 『한문교육연구』 제3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989.
 박종혁, 「해학의 산문정신과 비유적 기법」, 『한문학논집』 제8집, 근역한문학회, 1990.
 박종혁, 『한말 격변기 해학 이기의 사상과 문학』, 아세아문화사, 1995.
- 8) 국립중앙도서관 검색사이트(<http://www.nl.go.kr>)에는 각종 논문과 저서 외에도 이기와 관련된 다양한 교양책자, 홍보물, 전자서적 등이 열거되어 있다.
- 9) 김용섭 앞의 논문(1968, 1984) 참고.

사숙해온 반계 유형원, 다산 정약용 등 중농주의 실학자의 토지제도 개혁이론에 기초하여 광무정권의 양전사업에 참여했고,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좌절시키고 동시에, 간도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면서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도 큰 힘을 쏟았다. 그러므로 이기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땅(토지)과 관련된 그의 애정 어린 관심과 개혁적 의지를 분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본고는 이기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온 땅(국토¹⁰), 영토)과 관련된 이기의 인식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그의 자강론¹¹)의 특징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그의 사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위한 작은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기의 ‘자강론’은 그가 1906년 직접 참여한 대한자강회의 설립취지에

10) 본고에서 사용하는 ‘국토(國土)’라는 용어는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생활공간으로서, 국민(國民), 주권(主權)과 함께 국가(國家)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의 하나로 상정한다. 또한 이러한 ‘국토’를 대외적으로 자국의 소유임을 강조하여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로 인식할 때, ‘영토(領土)’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는 땅(領土), 바다(領海), 하늘(領空)을 모두 포함한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1996, 참고) 대한제국기 주요 언론 매체였던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는 영토적 개념으로써 ‘강토(疆土)’, ‘강산(江山)’, ‘산천(山川)’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주체적 개념으로써 ‘백성(百姓)’, ‘인민(人民)’, ‘국민(國民)’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대체로 초창기에 쓰이던 ‘강토’라는 단어는 ‘인민’ 내지 ‘백성’과 짝을 이루어 왕에게 귀속되는 의미를 포함함으로써 ‘왕토사상(王土思想)’을 드러내준다고 한다. 그러나 후반기에 이르면 이 ‘강토’라는 용어가 왕이 아니라 ‘단군(檀君)’이나 ‘국조(國祖)’ 등과 짝을 이루어 역사를 매개로 ‘민족’이나 ‘국민’에 귀속되는 근대적 개념의 의미를 보여준다. 여기서 ‘국민’은 ‘백성’과 달리, 임금에 귀속되지 않으면서 임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강토’(=조국)의 보존의식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전동현, 「대한제국시기 중국 양계초를 통한 근대적 민권개념의 수용—한국언론의 ‘신민(新民)’과 ‘애국(愛國)’ 이해」,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의 확대』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참고. 본고에서 사용하는 ‘국토(國土)’라는 개념은 대한제국기 후반에 언론에 사용된 ‘강토’라는 단어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11) 애국계몽운동기의 ‘자강론(自強論)’에 대해서는 『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9~10쪽 참고.

명시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화를 통한 국부의 증진과, 신식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그 주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자강론은 이미 이기가 1898년 총재관 이도재(李道宰)의 지휘를 받아 양무위원으로 참여했던 양전사업을 통한 경험, 즉 진결(陳結)의 발굴로 국가재정(稅源)을 확보하여 경장(更張, 개화) 정책의 실효를 도모한 것을 계승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²⁾ 한편 그가 감조론(減租論)을 주장한 것은 이미 동학농민전쟁을 진압하던 1894년 겨울 순찰사에 의해 추진된 호남지역 사전(私田) 도조(賭租)의 1/3을 감하여 소작인의 생계안정을 시도했던 일을 계승하는 것이었다.¹³⁾ 따라서 이기의 전제 개혁에 대한 인식은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소민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중농주의 실학자들의 토지개혁 사상을 근본적으로 계승하는 것으로써, 양전사업의 실시와 감조론의 제기를 통해서 그 자신이 몸소 국부민강의 개혁사상을 실천해나간 것이라고 이해된다.

12) 『海鶴遺書』 권1, 「田制妄言」; … 군려(軍旅)의 경비(經費)와 접빈(接賓)·제향(祭享) 등의 제공비(提供費) 및 흉년대비비(凶年對備費) 등은 국가(國家)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비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세액(稅額) 중 3분의 1을 그 비용으로 내기 때문에 천하(天下)의 가난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같이 가난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하물며 그 전결(田結)이 간이(奸吏)와 세민(細民)들에게 투탈(偷脫)된 것이 또 과반수(過半數)나 되니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 조속히 개량(改量)하여 그 누락된 세액을 조사하는 것이 한가지 일이 될 것이다.

13) 『海鶴遺書』 권1, 「田制妄言」; … 갑오(甲午)년(1894) 겨울에 순찰사(巡察使) 이공(李公)이 주현(州縣)의 지주(地主)로 하여금 본년(本年)의 토조예산(土租預算) 중 3분의 1을 감(減)하여 경작민(耕作民)들에게 혜택을 주라고 하였으나 구례(求禮)에는 그 말을 이행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전주(田主)만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작인(耕作人)도 감히 제의(提議)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본현(本縣)에는 인구(人口)가 많고 토지(土地)는 협소하여 수두(數斗)의 전답(田畝)도 온갖 계책(計策)을 부려 얻은 처지인데 지금 만일 전주(田主)의 뜻을 거스르면 반드시 경작지(耕作地)를 잃을 것이 명백하여 그 이해(利害)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법(法)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호(富豪)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곳에서 경험하였다. 이 두 조항(=公稅의 확보와 減租)은 내가 목표(目標)를 달성하려는 방법이다.

본고는 이같은 이해에 기반하여, 이기의 국토인식과 이에 기초한 자강론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장절을 구상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내적으로 농지(農地, 田土)에 대한 공유론과 이에 기초한 황무지(陳田, 陳荒田) 개척론을 서술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여 각종 경장사업(개화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민생안정을 추구한 이기의 국토인식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외적으로 그가 국가부흥 기회로 파악한 ‘간도 영토 및 이를 포함한 만주 지역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당위성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 토지 공유론과 황무지 개척론

2.1. 토지 공유론

현재의 전북 김제시 성덕면(조선후기의 萬頃縣)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보낸 이기는 조선후기 호남의 유학자들에게 중농주의 경세학(經世學)을 전해준 부안(扶安)의 실학자 반계 유형원(1622~1673)과, 강진에서 18년간 『경세유표(經世遺表, 초명 邦禮草本)』 등 실학적 경륜서를 저술하는 데 힘썼던 다산 정약용(1762~1836) 등의 영향을 받아, 당시 호남의 소작농에게 막중한 부담을 주었던 사전(私田)의 고율지대(高率地代, 소출의 1/2)를 경감시켜 주는 감조론(減租論)을 주창했다. 그의 감조론은 중농주의 실학자들이 제기했던 한전제(限田制), 균전제(均田制), 정전제(井田制) 등의 토지제도 개혁론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러한 그의 개혁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그의 체험과 토지 공유론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전제(田制)에 9등급의 차이를 두는 것(= 年分9等法)은 옛날 제도(制度)이다. 류반계(柳磻溪)의 『수록(隨錄)』과 정다산(丁茶山)의 『방례초본(邦

禮草本』에도 모두 이 제도를 취하여 법(法)으로 삼았다. … 내가 젊었을 때는 만경(萬頃)에서 살고 지금은 구례(求禮)로 이거(移居)하여 산야(山野) 사이에 살면서 친히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6등세(等稅, 田分6等法)도 대체로 참작한 바가 있는 것임을 안다. 이렇게 하여 농민의 수입에서 국가와 지주에게 바치는 것이 대략 1/9 정도가 되게 한다면, 이 법(法)이 시행되는 것을 부호(富豪)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토(田土)는 한 자 한 치도 모두 국가의 땅이므로 부호들이 감히 사유물(私有物)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며[然是田也 尺寸皆國家之土 而非富者之所敢私焉] 그 수입(收入, 私田地代)도 공적 세금(公稅, 자작농이 국가에 바치는 田稅)보다 6배(倍)나 많으니 이것이 어찌 백성의 도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이법을 시행하여 10~20년이 지나서 전답(田畝)이 모두 공전(公田)이 되고 세액(稅額)이 모두 관청으로 수급되기를 기다려, 이때 변화를 피하여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하는 것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¹⁴⁾

이기는 이처럼 부유한 지주들이 소작인들에게서 받아내는 도조[私田賭租]가 국가에 납부하는 전세(田稅)의 무려 6배에 달하는 부도덕한 현실과, 그 결과 국가와 백성이 날로 쇠약해지고 지주들만 배불리는 참담한 현실을 지탄하고, 이를 개선할 의지를 굳혔던 것이다. 그는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한 1894년 당시 구례에 살면서, 동학농민군이 함부로 백성들의 재산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의병을 규합하여 구례성을 지켰는데¹⁵⁾, 당시 농민군을 진압하고 백성들을 안집(安戡)하기 위해

14) 『海鶴遺書』 권1, 「田制妄言」

1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역편, 『兩湖右先鋒日記』(갑오12월6일) 146~147쪽,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7, 2010; 이에 의하면 구례유학(求禮儒學) 이기가 백성의 추대로 맹주가 되어 민병 수백명을 모집하여 동학군을 토벌하고 구례성을 지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 같은 국역총서 12권 346쪽의 『갑오군공록』에는 구례유학 이기가 군대를 모아 성을 지키고 비도(匪徒)의 괴수를 염탐하여 붙잡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물론 이기가 처음부터 동학도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이기는 처음에 동학군 지도자 진봉준과 힘을 합쳐 당시 조정의 부패한 국면을 제거하고 정치의 쇄신(刷新)을 도모하였다. 그 당시 그는 분명히 동학농민군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개남에 의해서 그의 제안

파견된 순찰사가 주현(州縣)의 지주들에게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받을 당해 연도의 토조(土租, 私田賭租)의 1/3을 감하여 소작농민에게 혜택을 주라고 했지만 구례에서는 불행히도 이런 지시를 시행한 지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작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소작인들도 감히 이런 지시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¹⁶⁾ 이기는 이처럼 농민 소출의 50~60%에 이르는 사전(私田)의 지대(地代, 賭租)를 정전제의 세법인 1/9 즉 소출의 10% 가깝게 대폭 감하면¹⁷⁾, 지주들의 토지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점차 사유지를 확대하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가진 전답마저 처분하게 되고 이런 토지를 국가에서 계속 매입하면 20년 내에 전국의 토지가 모두 국가의 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전을 관에서 매입하도록 추진한 관리에게는 그 액수가 전답 10결(稅出 20斛 증가)에 달하는 경우 품계를 더하여 주고, 이에 미치지 못했을 때도 의복과 마필(馬匹) 등을 하사함으로써, 토지 공매를 담당하는 관리들을 권면한다는 것이 이기의 생각이었다. 이기는 이렇게 사유 전답의 공전화(公田化)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도 그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지방관이 경작한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소유의 사전으로 삼는 경우, 대역죄를 적용하여 사형에 처하고, 임금도 더 이상 어떤 명목이든지 관리와 공신, 종친 등에게 토지를 하사[賜田]하지 않으면 마침내 정전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¹⁸⁾

이 거절당하고 오히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자 농민군에게서 도피(탈출)하였다가, 후에 농민군의 질서가 이완되고 폭도화되는 지경에 이르자 이를 진압하는 의병(義兵)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海鶴遺書』序(1942. 7, 鄭寅普)

- 16) 앞의 글 「田制妄言」; 甲午冬 巡察使李公 令州縣所在田主 就本年土租執算中 減三分之一 以惠耕作之民 然如求禮則 卒無奉行 此非獨田主之不肖 而亦作人之不肖也
- 17) 같은 곳; 一日定公私之稅 古者井田九一 … 故漢書所謂厥名三十 實十稅五者正爲今日語也 … 亦令富家 其土租之數 必親公稅而無得過 過者治之如律 …
- 18) 같은 곳; 名曰公買 而凡民田願賣者 皆令狀告于官 官給時直買之 以爲公田 … 至歲終 計上其買滿十結[稅增二十斛]者 加爵秩 不滿者 亦賜服馬 而獎勵之 … 名

이와 같은 이기의 감조론(減租論)과 이를 통한 사전(私田)의 공전화(公田化) 구상은 그가 이러한 방안을 제기한 19세기 말 ~ 20세기 초반의 조선사회에서 관리와 유림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의 대부분이 사전의 지주(地主)였던 것을 고려해볼 때 사실상 실시될 수 없었다. 공전화 전단계로서 제기한 감조론 그 자체도 사실상 관리들과 유림들의 거센 저항과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기 어려웠을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94년 호남 일대에서 순찰사가 지주들에게 지대[도조]를 1/3정도 감해주라는 지시가 조금도 먹혀들지 않은 데에서 이미 증명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의 이같은 제안은 조선후기에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중농주의 실학자들의 토지제도 개혁안인 한전제(限田制), 균전제(均田制), 정전제(井田制) 등의 근본취지, 즉 국가재정 확보와 소민 생계안정을 동시에 실천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간 구체화된 대안이었다.¹⁹⁾ 아울러 그의 이러한 토지제도 개혁안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그 이익을 개화정책 실시의 자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황무지 개척론 및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대한 전국적인 반대운동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日公田 則雖國君亦不得以私焉 凡王子公主及有軍功 當封賞者 皆不可輒賜土田 …

- 19) 김용섭 교수는 이같은 실학자의 전제개혁 방안은 1894년 갑오경장의 시행으로 봉건적 신분제의 폐지와 함께 그 물질 바탕을 이루는 지주전호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 동학의 접주 전봉준과 협상한 전라감사 김학진의 막료 김성규(金星圭)의 개혁론이 소작인의 지대를 1/4이하로 경감하고 소작권을 보호[永定]해주는 방안이었는데, 이기의 감조론과 함께 봉건적인 지주제의 소멸과 토지의 국유제를 전제로 한 토지재분배 방안이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기의 감조론은 지주층이 토지에 투자하는 지대를 상업자본으로 전화함으로써 상공업 발전을 통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유용한 방안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용섭, 「조선후기의 농업문제와 실학」, 『연세실학강좌』 II,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및 김용섭, 「해학 이기의 토지론과 양전론」, 『증보판 한국근대농업사연구』 下, 일조각, 1984.

2.2. 황무지 개척론

1904년 2월 러시아와 개전(開戰)한 일제는 전쟁이 일제에 유리한 형국이 조성되자 대한제국의 각종 이권을 탈취하는 등의 경제적 침략을 자행해왔다. 그중에서도 6월부터 일본공사가 어공원(御供院) 소관의 산림, 천택과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해오자, 서울의 유생들은 이를 반대하는 상소운동을 개시하였고, 7월에는 마침내 전국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보안회가 결성되었다. 1898년 이후 서울에 머물며 언론활동을 하던 이기도 이때 다른 유생들과 함께 무려 4차례에 이르는 반대 상소를 올렸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臣) 등이 들은 말에 의하면 일전(日前)에 외부(外部)에서 산림(山林)과 원야(原野)와 진황지(陳荒地)를 50년 기한(期限)으로 일본인(日本人)에게 차여(借與)하는 건(件)을 정부(政府)에 제의(提議)하여 도하(都下)의 인심이 매우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 신(臣) 등은 너무 당혹스럽고 놀라워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열강(列強)들이 생긴 이후 지토(地土)를 빼앗던 것[奪地]이 토지를 할양(割讓)하는 것[割地]으로 변하고, 토지를 할양하던 것이 토지를 차여(借與)하는 것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구역(區域)과 경계(境界)를 두고 말한 적은 있으나 전국(全國)의 모든 산림(山林)과 원야(原野)를 오늘날 일본인(日本人)처럼 요구한 사람은 있지 않았습니다. 신(臣) 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폐하(陛下)께서는 장차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시겠습니까?²⁰⁾

이기는 일제가 요구한 황무지 개척권을 단순한 차여(借與)가 아닌, 할양(割讓)의 단계를 거쳐 결국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빼앗는 행동[強占]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러일전쟁 개전 초기인 1904년 2월, 일제가 강요하여 대한제국과 체결한 한일의정서 제3조에도

20) 『海鶴遺書』 권4, 文錄2 疏奏 「論日人所求陳荒地 第一疏」

명시된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領土保全)이라는 약속을 파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일제가 요구하는 산림, 원야 및 진황지 등을 제외하면 우리 강토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²¹⁾ 이기는, 1900년 일제가 경기도 연해의 어업권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후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영남과 호남 지방의 어업권을 획득하고, 마침내 1904년 6월에는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의 어업권까지 요구하여 획득해간 사실을 예로 들면서²²⁾,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는 대한제국 전 국토를 강제로 약탈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황무지를 빌려주면 몇 년 안가서 우리 백성들이 짓던 기름진 농토마저 황무지가 되고 일본이 이를 또 차지하여 50년이 되지 않아 온 나라가 일제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²³⁾ 또 몇 년 전 일제의 순양함 몇 척이 인천항에 나타나 무력시위한 것에 놀라서 일제가 요구한 은행권을 양보해준 사실을 규탄하면서 일제의 무력에 굴복하면 천하의 웃음거리만 될 뿐이니²⁴⁾, 결사항전의 자세로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이기는 인적쇄신과 민심수습의 차원에서 일제의 무리한 요구에 호응한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 1858~1929)의 처벌도 요구했다.²⁵⁾

이기는 황무지 개간의 중요성을 국가재정의 충실과 직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국가의 경장정책(개화)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²⁶⁾ 그래서 그는 전국의 진결(陳

21) 위와 같은 곳 ; 然則除山林原野陳荒地外 更有我疆土耶

22) 같은 곳 ; 陛下獨不見漁採事乎 去年既認京畿及兩南 今年又認忠清及兩西 沿海數千里 所存幾何

23) 같은 곳 ; 強而巧者 日益以進 弱而拙者 日益以退 我之膏壤 亦化陳荒 日人之求 隨處隨地 不出數年 全國舉皆 則恐不能俟五十年之久矣

24) 같은 곳 ; 往年銀行券之相持也 適見巡洋艦數隻 行過仁港 而警懼許之 遂爲天下之所笑 陛下豈其忘之耶

25) 같은 곳 ; 伏乞陛下 亟以李夏榮付諸司法 治其私交之罪 以懲其餘 則宗社幸甚 臣民幸甚

結)을 조사하여 세원을 확보하되, 만약 고의로 전결을 누락시키면 처벌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화전에서도 세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강의 근본은 토지관리이므로, 외국인에게 토지를 매매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자고 했다.²⁷⁾ 이기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전결 탐색 및 세원의 확보를 주장한 것은 1899년 6월 양지아문의 양무위원에 임명되어 충청도 아산(牙山)과 전라도 흥덕에서 양전사업에 직접 종사하여 양전과 이에 따른 전결의 적발 등이 매우 중요함을 체득한 사실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²⁸⁾

이기는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국권을 회복하고 애국할 마음이 있다면, 국토에 대한 애정을 갖고, 우리 국토의 제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1906년 조직된 대한자강회 월보의 표지에는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당시 이 지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식자들도 다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기는 다음과 같이 한탄하며 우리 국토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국가(國家)에서도 지도(地圖)를 가르치지 않고 국민(國民)들도 지도(地圖)를 배우지 않은 지 수백 년이 되었다. 내가 자세히 모르는 일이지만 국내(國內)의 선비들 중 본보(本報)를 구독하여 이 지도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 그 산천(山川)의 험이(險易)· 기후(氣候)의 한난(寒暖)· 도리(道理)의 원근(遠近)· 호구(戶口)의 희조(稀稠)· 풍속(風俗)의 호오

26) 같은 곳 ; 夫軍旅之用 賓祭之供 凶荒之備 有國者所不能免 而今乃三十稅一 以出其費 故天下之貧 莫我國若也 … 國家更張之議固善矣 然吾恐其不成何也 夫財穀者所以收人材成事務之資也 而今以地土之所入 計經用之所出 不足已十有六七矣 …

27) 『海鶴遺書』 卷2, 急務八制議, 田制第五 ; 又非本國人 則不得賣買 其犯者之誅其身 而籍其家 此王法所不貸也 亟宜著爲律令

28) 『海鶴遺書』 卷2, 急務八制議, 地方制第四 ; 愚嘗以量務官 己亥夏往牙山 其秋往興德 而行量之際又有交界 則其田疇出入 殆若父字 民且相欺 而莫能辨正 國之無政蓋如此 …

(好惡)·물산(物産)의 다과(多寡)·전곡(錢穀)의 생산(生産)·소비(消費) 등을 알고 있지 않을 수 없다. 이 지도(地圖)가 국제(國計)와 민생(民生)에 관계되어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일인데 결국 지도가 무엇인 줄도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으니 이것은 학문을 잘못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²⁹⁾

이처럼 이기는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국토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가 참여한 대한자강회는 식민지화 직전에 놓였던 조국의 자력갱생을 도모한 단체였다. 이기는 자강회 회지인 『대한자강회월보』에 민심을 계몽하는 논설 등을 기고하였는데, 위 기사는 그 기고문 중의 하나이다. 이기는 위 인용문에서처럼 당시 한국인들은 지식인들조차 우리나라의 지도가 어떻게 생긴 지도 모르는데 비해, 한국에 주재한 외국인들은 몇 년간 잠시 한국에 머물면서도 반드시 우리나라의 지도를 구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니,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비극적 상황이라고 생각했다.³⁰⁾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학문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도학가(道學家, 벼슬을 포기한 유학자) 아니면 과거공부만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라서 기껏해야 우리나라 폭이 삼천리라는 것만 들어서 알고 있을 뿐, 산천, 기후, 도리, 호구, 풍속, 물산, 전곡 등 나라 운영에 필수적인 기초 지식조차 모르고 있으니 어찌 이같은 상태에서 애국할 수 있겠는가 하고 자문하면서 국권을 회복할 마음이 있다면 애국할 마음이 있는 것이니, 우리 국토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역설했다.³¹⁾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강하지

29) 『海鶴遺書』卷3, 文錄1, 論辯, 「月報卷表所畫大韓地圖說」

30) 위와 같은 곳; 愚未知全國之士 購覽本報 而能識此者 復有幾人耶 … 近見外人之來駐我韓者 或半年 或一二年 或十年 而未必以終身期也 然其至之日 必求我韓地圖 而加察焉 而況我韓國人 則豈獨爲一身計哉

31) 같은 곳; 故必曰愛國也 旣愛國 則當從何始否 吾雖未承諸公之教 然請以一言代表之 日當自土地始

못했기에 이민족인 일제의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삼천리 강토와 이천만 인구를 지닌 당당한 대한의 국민으로서 떨치고 일어나 자강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3. 간도 영유권과 만주 삼분론

3.1. 간도 영유권(間島領有權) 인식

이기는 우리나라의 상고사에 대한 나름의 확고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고대 우리 민족이 활동하던 무대가 한반도뿐 아니라 간도를 포함한 만주 대륙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1904년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하고 러시아가 일시 패퇴한 국제정세를 적극 활용하여 간도를 이침에 조선의 영토로 확보할 것을 정부 당국에 수차례 거듭 요청했다.

이기가 간도를 한국의 고유한 영토로 본 근거는 바로 이 지역을 포함한 만주 일대가 고조선 이후, 줄곧 고구려, 발해 때까지 우리 민족이 차지한 역사의 무대였다는 사실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의 옛 강토(疆土)는 간도(間島)뿐 아니라 서쪽으로는 봉황성(鳳凰城)으로부터 북쪽으로 길림성(吉林省)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가 소유(所有)하였는데 하물며 두만강(豆滿江) 밖의 가까운 곳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 수답(水畝)은 우리의 정전(井田)과 같고 그 백성들은 우리의 동포(同胞)들이다. 그런데도 청국인(淸國人)들이 관리(管理)하고 있다고 하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³²⁾

위 글은 1903년(癸卯年)에 이기가 쓴 글인데, 글이 완성되었을 무렵

32) 『海鶴遺書』 卷7, 文錄5, 서(序)·발(跋)·증서(贈序), 「題大韓疆域考後」

경위원에 체포되는 바람에 간행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기는 1897년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삼국이 일제의 만주진출에 일정한 제동을 건 삼국간섭 이후, 일제가 러시아와 한반도와 만주 등지에서 서로 자국의 세력을 부식시키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던 국제정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찍부터 한국 고대사의 시원이 단군이 개국한 고조선이었고 그 강역이 만주의 요서 지방으로부터 요동을 거쳐 한반도의 북부에까지 미치는 광대한 영역임을 인식하고 있었다.³³⁾ 그리고 이러한 고조선의 영역은 기자조선을 거쳐 북부여와 고구려, 발해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약간의 출입은 있었지만 대체로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1903년 봄에 대한제국 정부는 간도 개간을 위해서 관리관을 두고 그 주민들의 호적을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간도 경영에 나섰다. 그러자 이기는 이러한 조정의 조치에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방하면서, 당시 청국이 대한제국의 움직임에 경계의 빛을 띠면서 그 수계관(守界官)을 통해서 국경을 넘지 말 것을 요청해온 데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양국의 강역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즉 1712년(숙종38년) 청의 오랄총관(烏喇總管) 목극등(穆克登)이 조선의 하급관리들과 함께 세운 백두산정계비 이후, 양국이 서로 경계선을 다투어 왔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기는 이같은 상고사 인식과 영토의식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약소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동양의 한 강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간도의 영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정의 발빠른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던 것이다. 이기는 1904년 간도관리사 서상무(徐相懋)가 소환되면서 간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갈팡질

33) 이기의 이러한 고조선 인식은 1909년 3월 나인영, 계연수, 김효운 등 여러 인사와 함께 민족종교인 단군교(檀君敎)를 창립할 때 그가 쓴 『眞敎太白經』의 내용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이 책은 현존하는 『해학유서』에 실리지 못한 이기의 遺稿 중의 하나로서, 관련 서지사항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박종혁, 『해학 이기의 사상과 문학』, 아세아문화사, 1995, 107~134쪽을 참고하였다.

평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간도주민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은 서한을 대한제국 내부로 보냈다.

아! 천하(天下)에 갈 곳이 없는 궁한 사람은 오직 간도(壘島=間島)의 백성이라고 할까요? 서관리(徐管理) 상무(相戀)가 소환(召還)되던 날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 백성들은 서상무의 명성이 자자하므로 그를 받아들이어 호전(戶錢)을 잘 내었습니다. 그 형세는 밀으로 흐른 물과 같았습니다. 지금 정치할 줄 아는 사람을 구하여 안으로 백성을 안정시키고 밖으로 외국의 경모(輕侮)를 막으려고 한다면 조신(朝臣)들 사이에 어찌 서상무와 같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만일 저 일본인의 관리(管理)를 징계(懲戒)할 일이 있어도 그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재채기로 인하여 밥을 먹지 않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³⁴⁾

간도 관리자 서상무(1856~1925, 호 觀水齋)는 1897년경부터 ‘변계관리사’에 임명되어 통화현(通化縣)·회인현(懷仁縣)·관전현(寬甸縣)·흥경부(興京府) 등 주로 압록강 이북의 서간도 지역의 여러 곳을 대한제국의 새로운 행정구역에 배속시켰다. 또 서간도 지역의 토지를 측량하여 토지 대장을 작성하고 호구조사를 하는 한편, 향약을 시행하여 간도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기초 작업까지 하였다. 당시 청과 대한제국이 서로 국경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예민한 시기였기에 특히 이곳 간도에 파견된 관리사의 역할은 매우 컸다. 이때 간도 주민의 대부분은 조선후기 이후 월경하여 이주한 우리나라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고 정착생활을 도와주는 것은 당시 외교관계를 체결한 외국에 나가 그곳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위해 영사를 파견하던 국제관례를 보더라도 정당하고도 필요한 일이었다. 이기는 간도라는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34) 『海鶴遺書』 卷5, 文錄3, 書牘, 「代西間島民致內部」

주민들을 잘 위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과 자주 충돌을 일으키며 문제를 야기하던 비적(匪賊) 등 불량주민들에 대해서도 설득작업을 벌이고, 이미 그곳에서 정착한 지 오래되어 청국의 관리를 받고 있던 일부 우리나라 주민들도 우리나라에 귀화해오도록 장지연(張志淵, 1864~1921, 호 韋庵)이 저술한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를 서간도 지방 주민들에게도 널리 보급할 것을 주장하였다.³⁵⁾ 이기는 대한제국의 중흥이 간도 개척에 달려있다고 보고 거듭 간도 경영의 강화를 통한 국권회복의 길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하물며 왕자(王者)의 정치란 민심(民心)을 얻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이 말하기를 “백성이 있으면 토지(土地)가 있고 토지가 있으면 국가가 있다”고 하였으니 어찌 우리 한국(韓國)의 중흥(中興)을 여기(*간도개척)에 두지 않고 빠른 효과만 노리고 있으며 멀리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백성들도 모두 우리 열성조(列聖朝)의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 각하(閣下)는 이 문제를 정부에 제의(提議)하여 재주 있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말고 또 알력이 생기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즉시 새 관리(管理)를 속히 보내시어 수만(數萬)의 생명(生靈)들이 거친 땅에서 죽는 것을 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³⁶⁾

위 인용문의 밑줄친 부분을 보면 이기가 국가 유지와 발전의 요소로서, 백성과 토지(영토)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간도 개척이야말로 대한제국 부흥의 기틀이 된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35) 『海鶴遺書』 卷7, 文錄5, 서(序)·발(跋)·증서(贈序), 「題大韓疆域考後」

36) 『海鶴遺書』 卷5, 文錄3, 書牘, 「代西間島民致內部」

3.2. 만주 삼분론(滿洲三分論)

이기는 간도의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주 전체가 옛 우리 조상들의 터전이었다는 그 나름의 상고사 인식에 기반하여 현재 청나라가 차지한 만주 지역을 삼분하여, 한국, 청, 일본이 분점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조용히 생각해 볼 때 만주(滿洲)의 동삼성(東三省)은 모두 우리 한국의 옛 강토(疆土)이다. 그러나 이 일은 전조(前朝)에 속한 것이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청(淸)나라 초기(初期)에 목극등(穆克登)이 분수령(分水嶺)을 국경(國境)으로 정할 때 강압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손실을 보았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천하(天下)의 의사(義士)들이 분통을 터트리었다. 후일 일본이 만일 만주(滿洲)를 점유하려고 할 때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취하고 청국(淸國)에게서 취하지 않는다면 그 할양권(割讓權)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만주(滿洲)를 3등분(等分)하여 동쪽은 일본(日本)·남쪽은 한국(韓國)·서쪽은 청국(淸國)으로 귀속시켜 3국(國)의 정병(精兵)과 병기(兵器)를 이 곳에 집결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병사들이 나가면 서로 싸우고 들어오면 서로 지키어 러시아로 하여금 조랍령(烏拉嶺) 밖에는 한 발자국도 엿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 선후책(善後策)으로서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³⁷⁾

이처럼 이기의 이른바 ‘만주삼분론(滿洲三分論)’은 당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만주의 패권을 일본이 러시아와 싸워서 획득한 경우를 상정하여, 일본에게 이웃나라간의 교린하는 우호적 도리에 호소함으로써, 만주에 그 이해관계를 두고 있는 한, 중, 일 삼국이 사이 좋게 삼분해서 보유하지는 방안이었다.³⁸⁾ 따라서 이기는 일본의 호의를 이끌어내

37) 『海鶴遺書』 卷3, 文錄1, 論辨, 「三滿論」

38) 이에 대해서 김도형 교수는 만주삼분론은 러시아를 제외한 후에 세력균형을 이루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해했다. 김도형, 「해학 이기의 정치사상연구」, 『동방학지』 제3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2.

기 위해서, 러일전쟁 개전 때부터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동양의 황인종을 대표하여 서양열강 백인종의 일원인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동양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한, 중, 일 삼국의 동맹을 이끌 맹주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러일전쟁의 국면이 일제의 승리로 귀결되는데도, 일제가 개전 초 대한제국에 독립과 영토보전을 약속한 것과는 정반대로 대한제국 침략 야욕을 분명히 드러내자 자연스럽게 포기되고 말았다. 만주삼분론은 커녕 한반도의 보존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고 일제가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협하는 패자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명백하게 비판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따라서 이기가 러일전쟁 개전 초기에 일본에게 선의를 호소한 것은 상황논리에 따른 부득이한 전술이었다고 이해된다.

대체로 동양(東洋) 3국(國)은 정족지세(鼎足之勢)를 이루고 있으므로 한 나라가 망하면 모두 기우러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형세가 고르게 유지되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 한국(韓國)은 땅이 작고 국민들의 수도 적어 자립(自立)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일본(日本)과 청국(淸國)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 간혹 어떤 사람들은 전쟁(戰爭)에 승리(勝利)하면 일본인(日本人)은 반드시 만주(滿洲)를 청국(淸國)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한다. 천하(天下)의 의리가 당연히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 한국(韓國)의 옛 강토(疆土)를 모두 그 가운데 포함한다면 이것은 공정한 사안(公案)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청국(淸國)의 정치(政治)가 너무 부패하여 지금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비록 북경(北京) 부근이라도 지키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만주(滿洲)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 청(淸)나라가 비록 만주(滿洲)의 3분의 2를 한국에게 떼어준다 하더라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한국 사람이므로 이 말이 한국에 유리하게 말한 것 같지만 천하(天下)의 형세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양해할 수 있을 것이다.³⁹⁾

39) 『海鶴遺書』 卷3, 文錄1, 論辨, 「三滿論」

시국(時局)을 논하기 좋아하는 어떤 손님이 나를 방문하여 물기를 “일본인(日本人)이 동양(東洋)의 패권(霸權)을 질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다시 “지금 동양(東洋)에서는 정치(政治)·병력(兵力)에 있어서 일본처럼 강한 나라가 없는데 선생께서 패권을 질 수 없다고 단언(斷言)하시니 왜 그렇습니까?”라고 하므로 나는 “천하(天下)의 인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패도(霸道)와 왕도(王道)의 차이는 만리(萬里)의 거리가 있습니다. … 일본인은 러시아보다 강하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실책(失策)을 하였으므로 러시아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어찌 패권을 질 수 있겠습니까?⁴⁰⁾”

1904년 러일전쟁의 개전과 동시에 전쟁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쓴 위의 두 글은 당시 동아세아 국제정세가 매우 급변하고 있었던 상황과 이에 대처하는 이기의 국토관 내지 영토의식을 잘 말해준다. 이기는 만주 전체가 옛 우리조상들의 영토였기에, 이제 비록 그 2/3를 대한제국이 차지한다고 해도 청나라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이기가 앞서 제기한 만주삼분론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이 비록 만주 전체를 차지하고 동아시아의 실질적 패권을 휘두른다 해도 이를 결코 도의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한제국의 독립과 옛 영토인 만주의 회복을 보장할 수 없게 된 작금의 냉정한 현실, 즉 일본의 배신행위와 침략적 속셈을 비로소 직시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기는 일제의 영토 침략 야욕이 명백해진 국제정세 하에서, 대한제국이 때에 맞게 외교적으로 잘 대응하여 잃어버린 옛 조상들의 국토를 회복하는 일은 차치하고, 이제는 현존하는 강토라도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굳게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절박한 의무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이기는 일제가 러일전쟁의 승기를 잡으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다가, 이것이 좌절된 후 본격적으로 대한제국

40) 『海鶴遺書』 卷3, 文錄1, 論辨, 「日霸論」

의 강토를 침략하기 위해 마침내 1905년 11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이른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한 사실을 직시해야만 했다. 그는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주창하기 위해 민간인으로서 도일하여 일본의 천황과 대신 등에게, 러일전쟁 이후 조선에 강요된 일련의 조치들의 부당함을 성토했고 정의에 입각해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존해줄 것을 호소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했다.⁴¹⁾ 그러나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귀국하고 말았는데, 이를 계기로 하여 이기는 이전과 같이 일본의 양심과 선의에 호소하는 입장을 완전히 버렸다. 현실적으로 급박한 위기에 처한 대한제국의 주권과 한반도라는 현존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일에 집중하느라 더 이상 ‘만주삼분론’을 제기할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귀국(貴國)은 폐국(弊國)에게 흉폭(凶暴)한 일을 저지른 것이 날로 심하고 달로 심하였으며 신의(信義)를 저버리어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날 말한 ‘조선국(朝鮮國)의 독립(獨立)과 자주(自主)는 일본(日本)과 평등(平等)하게 보유(保有)할 권리(權利)가 있다’는 것이 지금은 우리를 노예(奴隸)로 여기고 있으며 지난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한국(韓國)은 독립국(獨立國)이므로 그 토지(土地)와 주권(主權)을 공고(鞏固)히 한다’는 것이 지금은 한국(韓國)의 토지(土地)와 주권(主權)을 빼앗아가고 있으며 지난날 ‘서로 침월(侵越)·시의(猜疑)하지 않는다’는 정중한 서약(誓約)이 지금은 오로지 침탈(枕奪)을 일삼아 우리 이천만(二千萬) 국민(國民)들이 원수로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우리 국민들이 동쪽으로 향하여 앉지 않게 하였으며 지난날 “체결한 조약(條約)은 변경하지 않고 이를 영원히 준수(遵守)하고 영원히 안녕(安寧)을 누리다”는 것이 지금은 조약(條約)을 변경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고 서로 안녕(安寧)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신명(神明)을 속이고 또 천하(天下)의 열국(列國)을 속이는 행위입니다.⁴²⁾

41) 나중우, 「해학 이기의 구국운동과 그 사상」, 『원광사학』 제2집, 원광대학교 사학회, 1982.

위 글은 을사늑약에 분노하여 의병을 일으킨 최익현(崔益鉉, 1833~1906, 勉菴)이 일본 대마도로 끌려가 순국하고 난 뒤에 이기가 그의 애국정신을 기려서 지은 최익현의 전기이다. 이 전기를 통하여 이기는 최익현이 제기한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의 전 과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1907년 3월, 이기는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응징하는 일이야말로 흠어진 인심을 단합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발양하는 길이라 믿고, 나인영, 오기호 등 동지들과 함께 자신회(自新會)라는 비밀 지하 단체를 조직하여 을사오적을 응징하는 의열투쟁에 나섰다. 이 투쟁의 실패로 동지들과 함께 이기는 진도로 7년 유배형을 받고 일시 유배되었다가 고종의 특사로 풀려난 후, 1907년 후반부터, 대한자강회의 정신을 계승한 호남학회를 조직하여, 회보를 발행하고 그 주필이 되어 식산흥업과 신교육 실시를 골간으로 하는 계몽활동을 전개하면서 민족의 자강을 통한 국권회복에 더욱 진력하였다.⁴³⁾

4. 맺음말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학자 정인보(鄭寅普, 1893~?, 호 爲堂)는 우리민족의 격동기인 대한제국기에 활동한 해학 이기의 일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줄을 알면서도 종신토록 하는 것은 지성(至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공(公)은 호남(湖南)의 한사(寒士)이므로 한 치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 …공(公)은 그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생각과 나무 하나로 큰집을 지탱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집권자(執權者)와

42) 『海鶴遺書』 권9, 文錄7, 전(傳)·잡저(雜著), 「崔益鉉傳」

43) 박종혁, 앞의 논문(1995) 참고.

계속 싸웠고, 그래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근시(近侍)에게 결탁하여 상(上)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며, 그래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저쪽의 주요인물과 항론(抗論)을 벌였고, 그래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바다를 건너 유세(遊說)를 하였고, 그래도 또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칼과 창을 가지고 6~7명의 간신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그는 신을 벗고 찰나를 다투었다. …그는 결국 국가의 존망(存亡)에 대한 의리를 이행하였다.⁴⁴⁾

정인보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기의 인생은 구국일념으로 점철된 교훈적 생애였다. 본고에서는 정치, 경제, 교육, 문학 등 제반 분야에 대한 다양한 사상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나라의 땅(국토, 영토)과 관련된 그의 인식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필자가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이기는 19세기 말 ~ 20세기 초, 동북아시아의 격변하는 약육강식의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제국이 자주적 근대화(更張 開化)⁴⁵⁾를 이룩해갈 물질 기초는 토지제도의 정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해했다. 즉 그는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가 대세로 자리잡은 당시 상황에서 지주층의 소작농민에 대한 과도한 지대(賭租) 수탈이야말로 소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국민의 단합을 방해하며, 농업국가에서 상공업을 육성하는 근대 국가로 이행하는 데 중대한 방해 요소가 된다고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기는 감조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경작인의 생계를 도모하고, 지주의 토지수익율을 떨어뜨려 자진 방매(放賣)를 유도함으로써, 토지의 국유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토지의 국유화를 통하여 중국에는 국세의 안정적 확보와 국민의 생계를 동시에 보장하는 정전제와 같은 토지의 재분배를 그 방안으로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44) 『海鶴遺書』序, 鄭寅普

45) 청에서 도입한 변법경장(變法更張)과 일본에서 도입한 문명개화(文明開化)를 합친 개념.

둘째, 이기는 양전사업의 참여를 통하여 진결을 적발하여 세원을 확충하고, 국토의 황무지를 개척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을 늘려 자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1904년 일제가 한국의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했을 때, 당연히 맹렬한 반대 상소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셋째, 이기는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상고사 인식을 통해 간도는 물론이고 만주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옛 강토였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이기는 간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간도 관리사의 존재가 매우 귀중함을 역설하면서, 청나라의 간도영유권 주장과 과감히 맞서 싸울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격동하는 국제정세를 잘 이용하여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만주를 획득할 경우 이를 한, 중, 일 삼국이 균분할 것(滿洲三分論)까지 주장하였다. 이기는 이러한 옛 영토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대한제국의 중흥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가 지닌 자강론의 대외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기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국가발전, 즉 자강의 기본으로 삼고, 그의 일생을 자강운동에 헌신했던 사상가였다.

참고문헌

일차자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역편, 『양호우선봉일기』,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7, 201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해학유서』, 한국사료총서 3, 탐구당, 1971.

『질재고(質齋藁)』(천주육변)

「답영남유자이기서(答嶺南儒者李沂書)」

「법인근사리석사여헌하(法人謹謝李碩士旅軒下)」

이차자료

- 김광수, 「시론이기적교육사상」, 『조선사연구』, 1983.
- 김도형, 「해학 이기의 정치사상연구」, 『동방학지』 제3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2.
- 김상기, 「이해학의 생애와 사상에 대하여」, 『아세아학보』 제1집, 아세아학술연구회, 1965.
- 김용섭, 「광무연간의 양전사업에 관한 일연구」, 『아세아연구』 제11권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8.
- 김용섭, 「광무연간의 양전·지계사업」, 『한국근대농업사연구』 下, 일조각, 1968.
- 김용섭, 「해학 이기의 토지론과 양전론」, 『증보판 한국근대농업사연구』 下, 일조각, 1984.
- 기태완, 「해학 이기의 사상과 시문학」,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나종우, 「해학 이기의 구국운동과 그 사상」, 『원광사학』 제2집, 원광대학교 사학회, 1982.
- 이강오, 「항일구국의 근세 실학자」, 『전북인물지』 上, 전북애향운동본부, 1983.
- 이강오, 「해학 이기 선생의 생애」, 『해학 이기 선생』, 해학이기선생구국운동추념비 건립위원회.
- 이영협, 「해학 이기고」, 『학술지』 제14집,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1972.
- 이완재, 「해학 이기의 교육사상」, 『사학논지』 제1집, 한양대학교 사학과, 1973.
- 이유립, 『대배달민족사』, 고려가, 1987.
- 이중각, 「한말실학자 해학 이기 연구-교육사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 박종혁, 「구한말 해학 이기의 국권회복을 목표로 한 민족종교사상」, 『한배달』 (가을호), 1990.
- 박종혁, 「해학 이기의 사상적 전이의 과정(해학연구 기일)」, 『한국한문학연구』 제12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9.
- 박종혁, 「해학 이기의 천주교 비판-프랑스 신부 로베르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下, 벽사리우성교수정년퇴직기념논총, 창작과 비평사, 1990.
- 박종혁, 「해학 이기의 현실인식에 대한 문학적 대응」, 『한문교육연구』 제3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989.
- 박종혁, 「해학의 산문정신과 비유적 기법」, 『한문학논집』 제8집, 근역한문학회, 1990.
- 박종혁, 『한말 격변기 해학 이기의 사상과 문학』 아세아문화사, 1995.
- 임인자, 「이기의 가정교육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전영배, 「구한말의 가정교육관-해학 이기의 가정학설을 중심으로」, 『교육사교육철학』 제3호, 교육사교육철학연구회, 1979.
- 전영배, 「해학 이기의 교육사상」, 『국제대학 논문집』 제6집, 국제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78.
- 정경현, 「한말 유생의 지적 변신 : 해학 이기(1848~1909)의 경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육사논문집』 제23집, 1982년에 재수록)
- 정승교, 「이기(李沂)의 사상에서 ‘공(公)’의 의미」, 『역사와 현실』 제29호, 한국역사연구회, 1998.
-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 편, 「이기」, 『교육사상가평전: 한국편』, 교육연구사, 1987.
- 한정석, 「해학 이기의 사상과 문학」,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논문투고일 : 2015. 08. 20. / 심사완료일자 : 2015. 09. 10. / 게재확정일자 : 2015. 09. 10.

The Recognition of National Land and the Theory of Self-Powerful Country, by a Confucianist of Jeon-Ra Province Yi-ki(李沂, 1848~1909), in Modern Transitional Times

Won, Jae Yeon*

Yi-ki(李沂, 1848~1909) a patriotic journalist thought that the reformation of the land system is the basic policy of self-powerful country, bringing about the expansion of the source of tax revenue and the secure the livelihood of national citizen. He succeeded the physiocratism of realistic school. He tried to nationalize the privately-owned land gradually through the reducing rent meaning the forsaking of the possessiveness for land by big landowners, and so he might realize the ideal land-owning system Jeong-Jeon-Je(井田制) based on the theory of public sharing the land. He recognized well the importance of making sure of the rent than any other through his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land survey in 1899. So he eventually frustrated temporally the imperial Japanese intention of getting the right of cultivating the waste land in Korea, by four times handing in the petition of opposing the intention in 1904, fighting together Bo-An-Hoi(保安會) through taking effective nationwide public opinion movement. He thought that the recovering of Manchurian territory containing the province of Gan-Do(間島) by Korea is very rightful, for he had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ancient history that the territory was living land of Korean ancestors from the period of

* Jeonju University

Gojoseon(古朝鮮) to the time of Goguryeo(高句麗) and Balhae(渤海). So he urged the continual dispatch of smart officer of managing the province of Gan-Do and he expressed his opinion on the trisection of Manchurian territory (滿洲三分論) by the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it should come true by persuading the Japanese when they defeated the Russian through the Japanese-Russian War. This opinion was the external expression of his internal recognition of national land based on the theory of self-powerful country.

Key Words Yi-Ki(李沂), Physiocratism, Patriotic Journalist, A Theory of Public Sharing the Land, A Theory of Reducing Rent, Dominionium of the Province of Gan-Do, A Theory of the Trisection of Manchurian Territory, A Theory of Self-Powerful Country, A Recognition of National Land

